

## 협 회 소 식

### ◇ 제 4 차 실행이사회 개최

당협회는 1984. 6. 11 제 4 차 실행이사회를 소집, 5월중 처리한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제 17 회 산업안전보건대회 행사계획 등을 협의하였다. 특히 이날 실행이사회에서는 84년도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항목중 “보고서작성비”의 적용을 금년 연말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경기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검진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처리된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으며, 임원중인 계원철부회장 이외에는 전원이 참석하였다.

#### — 보고사항

- 제 17 회 산업안전보건대회 행사계획
- 직원근무평정 세칙 제정
- 제 1 회 한일산업보건학술집담회 개최 결과

#### — 협의사항

- 의사처우개선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
- 국고보조금 신청 ( 규모 약 8,000 만원 )

### ◇ 각 지부 산업보건센터 산업위생과장 회의

당협회본부에서는 1984. 6. 15 각 지부 산업보건센터 산업위생과장 회의를 소집하고, 국고보조신청을 위한 각 지부별 대상품목을 협의 확정하였으며, 관내 작업환경측정 참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각종 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고 기일을 엄수하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지방에서 작업환경측정을 둘러싸고 사업주와 측정기관간에 약간의 물의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르게 하고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제몽과 서어비스활동을 강화할 것을 특별지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본부 최병수 업무이사, 이광목 보건진단협의회 전문위원장, 이동영 보건관리과장과 서울·부산·대구경북·전남·경남지부의 산업위생과장 전원이 참석하였다.

◇ 산업보건 실사반 운영

노동부와 당 협회 특수검진기술협의회는 합동으로 산업보건 실사반을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직업병 예방사업의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여 지도 계몽하고, 향후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보건사업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부 1명, 협의회측 2명을 1개반으로 하여 산하 24개 특수검진기관에 출장, 인력시설 및 기계기구 현황, 특수검진 적정실시 여부, 관할범위 적정여부, 기타 행정처리사항 등을 합동 실사하게 된다. 이 실사반의 운영목적은 특수검진기관의 감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83년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후, 특수검진사업의 제도개선(구역제 실시 및 책임검진제 확립)에 따르는 성과를 중간평가하여 미비점이 있으면 이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 계몽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번 실사반은 특수검진기관의 작업환경측정 분야도 실사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와 협의하여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보건관리체제, 보건관계자 직무교육 이수 및 활용상황, 특수검진 수검 및 작업환경측정 여부를 실사할 수 있다.

84년도 실사반은 7월중에 각 특수검진기관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실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개선책을 강구, 85년도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제학회참가신청안내



국제학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참가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21 차 국제산업보건학회

일 시 : 1984년 9월 9일~14일

장 소 : 아일랜드 더블링시



☞ 확인하면 안전하고 점검하면 사고없다